

고 또한, 병아리 생산업체(부화장)가 모두 동참한다는 보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생산된 계란에 부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개개인의 계란 생산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거래처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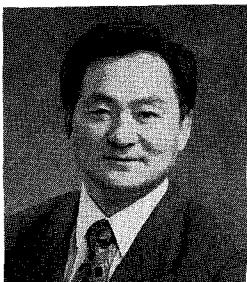
사료관련 업체에서 일전에 사료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모처럼 조성된 의무자조금 제도를 무의미하게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다시한 번 재고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 본다.

자조활동 자금 사용도 중요하지만 양계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쓰여지는 만큼 전 생산자가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조성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방법이 도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양계]**

\*\*\*\*\*

## 양계인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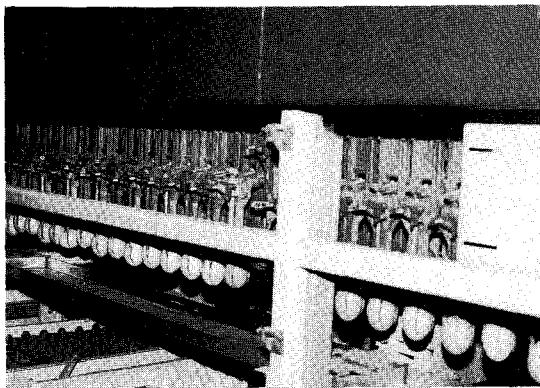
이상호  
(산청 산골농장 대표)

**자** 조금의 제도에 관하여 생각을 말하기가 시기적으로 무척 힘이 들지만 축산 농가(특히 양계농가) 독자 여러분께 필자의 개인 생각과 개인적인 상식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밝혀두면서 다소 맞지 않은 통계나 부족한 부

분이 있어도 양해를 구하면서 원고를 접필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산청에서 산골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30년이란 세월동안 계란과 함께 유통사업을 병행해오면서 가격과 품질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최근의 채란산업은 세월의 흐름 속에 품질과 유통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부분이 대형화, 자동화란 두 축의 둘레에서 생산과 유통의 변화를 맞아 생산농가에서는 생산과잉으로 인한 유통 침체와 급기야는 폐계 처리가 어려워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필자의 농장에서도 5만수 계군의 도태가 어려워 산청의 조그만 군에 닭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는 지경에까지



왔으며 국내 전체 지역이 질병의 사각지대에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둔화로 시세 폭락과 계란 재고의 누적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요즘에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본인이 일천원을 내면 정부에서 일천원을 보태서 준다는데 왜 이것을 마다하겠는가.

이는 거출방법과 사후에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문제가 되리라고 본다. 특히, 지난해 정부에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자조금 제도)이 법으로 통과되어 각 축산 단체가 축종에 따라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자 고심하고 있으며, 우리 양계 부분도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우선 일본이나 미국의 자조금 제도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양계 농가가 기금을 마련하면 정부에서는 대웅 기금 연출법으로 의무 자조금 제도가 아니고 참가자 자유의사로 가입, 수혜도 참가자에게만 공급하는 지금까지의 국내 협회가 주도한 방법과는 사뭇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내는 사람은 내는 만큼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일본에서는 작년에 닭 수당 6엔(60원)을 거출하였으며, 자조금 사용은 주로 계란 안

정지주기금으로 참가농가들의 평균시세가 원가 이하의 어려운 때 사용한다든가 하여 협회나 단체에서 주체가 되어 사용하기보다는 농가들이 직접 어려울 때 사용한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 에그보드(계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로 대군 양계가, 학자, 관계기관, 소비단체 등이 참가하여 대군농가들이 자조금을 계란 생산량에 따라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계란영양연구, 콜레스테롤 연구(대학용역), 요리 콘테스트 및 요리경연대회 등에 쓰여지며, 미국에서의 대군농가가인 60여농가(전체 90% 차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육계는 자조금의 참여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나라별로 차이점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국내 자조금 제도가 일본처럼 농가별 규모에 따라 폐계 도태시 자조금을 부과하든지 생산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사용처라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협회 등이 주체가 되어 홍보 등에 쓰여진 것보다 정말로 생산농가가 어려울 때 쓰는 일본식의 직접혜택 방식을 택했으면 한다. 즉, 노계 처리공장에 대한 적절한 운영, 액란공장 활성화, 또는 노계 가공 및 처리를 위한 연구(대학이나 연구기관 용역), 기타 양계를 위한 연구 등으로 쓰여 농가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무자조금 제도는 전 양계인이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자금 거출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하고 쓰는 목적을 농가가 직접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양계]**